

## I 개정 배경

### □ 생명공학 · 의료 분야 특허에 필수적인 서열목록의 표준 고도화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및 3개 서열정보 데이터센터 간 효율적인 서열목록 데이터 공유를 위해 '10년부터 국제표준 개정\*을 논의

\* 기존에는 공통된 형식과 구조가 없어 각국 특허청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시행  
→ 데이터 교환이 어렵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시 데이터 손실이 발생

#### ▶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 특허 출원에 개시된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여 명세서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

핵산	acctcgggtccgtaggaattccc...
아미노산	MAGCPCGPSMGS PMSP...

#### ▶ INSDC(국제핵산염기서열정보협력)

-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공개 DB 제공

\*美NCBI(생명공학정보센터)  
日DDBJ(DNA 데이터뱅크)  
유럽EMBL(생물정보연구소)



-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자화된 서열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취득하여 후속발명을 개발할 수 있도록 新국제표준(ST.26)이 시행\*

\* 모든 특허청은 '22.7.1일부터 신규 국제표준을 적용하기로 WIPO 총회에서 합의

< 서열목록 국제표준 변경(ST.25→ST.26) 및 주요 차이 >

구 분	ST.25	ST.26
전자파일형식	Text	XML
서열목록 제출방식	서면, 전자파일	전자파일
<10 핵산염기 또는 <4 아미노산 서열	전자파일에 기재 가능	전자파일에서 배제 (명세서에 기재)
전자파일의 명세서 지위 (우리청)	미부여	명세서의 일부로 인정

### □ 임시 명세서<sup>1)</sup> 출원 제도 등의 입법미비 사항을 해소

- 임시 명세서의 쏠文보정 전에 제출되는 보정서에 대한 반려 근거가 누락되어 출원인 혼란 및 민원 발생\*이 우려

\* 예) 청구범위만을 적어서 낸 명세서등 보정에 대해 적절한 반려사유 선정 곤란

1)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논문이나 기술문서 등을 pdf 등 다양한 파일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20.3.30 시행)

## II

## 주요 개정 사항

1

###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

(특칙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13·38, 별지 제9호/제14호/제15호/제35호/제41호/제41호의2/제43호/제51호/제51호의2/제53호/제57호서식, 실칙 제4조, 제13조의5, 별지 제1호서식)

### □ 개정 이유

- 생명공학·의료 분야 특허에 필수적인 서열목록\*의 국제표준이 전환되어 시행 일정(22.7.1)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의 정비 필요

\*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 염기(아데닌, 구아닌 등) 등의 배열순서 정보를 수록한 것

#### < 서열목록 기재 예시 >

기존표준 ST.25	신규표준 ST.26
<p>[명세서 본문]</p> <p>【0182】서열목록 프리 텍스트            【0183】서열번호 1; pND1의 프로모터 부위            【0184】서열번호 2; pND6의 프로모터 부위</p> <p>[서열목록 전자파일] TXT</p> <pre>&lt;210&gt; 1 &lt;223&gt; A sequence for promoter region on pND1. .....  &lt;210&gt; 2 &lt;223&gt; A sequence for promoter region on pND6. .....</pre>	<p>(프리 텍스트 반복 기재 불필요)</p> <p>[서열목록 전자파일] XML</p> <pre>&lt;ST26SequenceListing originalFreeTextLanguageCode="en" nonEnglishFreeTextLanguageCode="ko"&gt; {.....} &lt;/ST26SequenceListing&gt;  &lt;INSDQualifier_value&gt;A sequence for promoter region on pND1&lt;/INSDQualifier_value&gt; .....</pre>

- 표준 미전환 시 국내 출원인의 서열 관련 발명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화가 곤란\*하여 관련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위축이 우려

\* 국내·외 표준 불일치로 조약우선권에 근거한 해외출원(파리루트 및 PCT)에 문제

### □ 개정 내용

- 서열을 포함한 출원을 하는 경우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게 하고 제출된 서열목록은 명세서(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

\* (기존) 서열목록을 명세서에 기재 및 전자파일 제출 → (개정) 전자파일만 제출

- PCT 규칙 5.2(a) 국제출원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서열목록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발명의 설명은 시행세칙의 기준에 부합하는 발명의 설명 중의 서열목록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 PCT 시행세칙 제207조(a)(vii) 발명의 설명 중의 서열목록부분은 부속서 C에 따라 별도의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서열목록전자파일의 보정은 별지 제9호서식(‘출원서 등 보정’ 선택)에 파일을 첨부하여 하고 이 경우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으로 간주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

현 행	개정안
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u>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u>	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u>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u>
②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u>이 경우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으로 본다.</u>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도 동일하게 개정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일부 >

현 행	개정안
※ 기재요령 (생략)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input type="checkbox"/> 안에 표시한	※ 기재요령 (현행과 같음)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input type="checkbox"/> 안에 표시한

**현 행**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서열목록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합니다) 제출 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과 동일함)”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전자파일】첨부~~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도 동일하게 개정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일부 >

**현 행**

10. 【기타사항】란

라. 서열목록

(1) (생략)

- (2)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 ~~【서열목록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 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적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개정안**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및 【서열개수】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 1부”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삭제>

**현 행**

10. 【기타사항】란

라. 서열목록

(1) (생략)

- (2)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 ~~【서열목록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 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택일하여 적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개정안**

10. 【기타사항】란

라. 서열목록

(1) (생략)

- (2)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제출하고, 【첨부서류】란에

**현행**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의 서열 목록 작성 및 제출요령 “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하고,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며,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과 동일함)”라 적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적힌 것과 동일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전자파일】—첨부~~

12. 【첨부서류】란  
가.~마. (생략)

**개정안**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라 적으며,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적힌 것과 동일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삭제>

12. 【첨부서류】란  
가.~마. (생략)

- 시행일별로 보정서에 적용되는 보정단위와 보정방법 일람표를 정비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일부 >

**현행**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1. 특허출원인 경우

가. ~ 다. (생략)

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분(2015년

**개정안**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 1. 특허출원인 경우

가. ~ 다. (생략)

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현행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제외합니다.)

식별항목명	보정 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 방법	비고
(생략)			
발명의 내용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생략)			
도			
서열목록			

### <신설>

2. 국제특허출원번역문 제출인 경우

## 개정안

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제외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포함합니다.)

(현행 표(左)와 동일)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제외합니다.)

<라의 표(左)에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삭제 및 서열목록 항목 위로 올림>

식별항목명	보정 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 방법	비고
(생략)			
발명의 내용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생략)			
도			

## 현행

가. ~ 나. (생략)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표 생략)

### <신 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가. ~ 다. (생략)  
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제외합니다.)

(표 생략)

### <신 설>

4. 실용신안등록 PCT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 나. (생략)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표 생략)

### <신 설>

## 개정안

2. 국제특허출원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 나. (생략)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현행 표와 동일)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다의 표에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항목 및 ‘서열목록’ 항목만 제외>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가. ~ 다. (생략)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  
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  
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제외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  
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포  
함합니다.)

(현행 표와 동일)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  
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  
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제외합니다.)

<마의 표 : 라의 표에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항목을 ‘서열목록’ 으로  
변경하고, ‘서열목록 항목’ 을  
제외(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정정)>

4. 실용신안등록 PCT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 나. (생략)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현행 표와 동일)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현 행
-----

개정안
-----

<라의 표 : 다의 표에서 ‘서열목록’ 항목 및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항목만 제외>

- 출원인에 의한 지연 기간 판단에서 서열목록 제출 부분은 제외하고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으로만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 >

현 행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생략)
1. ~ 3. (생략)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b>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 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b> 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b>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b> 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안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현행 본문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b>서열목록전자파일</b> 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b>서열목록전자파일</b> 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5도 동일하게 개정

- 서열목록의 자유 텍스트와 기준數 미만 서열에 대한 기재요건 정비
  - 자유 텍스트를 발명의 설명에 반복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조약규칙 개정에 따라 보정요구 조항 등을 삭제

• PCT 규칙 5.2(b) 발명의 설명 중의 서열목록 부분에 포함된 언어의존적 자유텍스트는 발명의 설명의 본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지 말아야 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3 >

현 행
제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①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자 제35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개정안
<조항 삭제>

⇒



**현행**

**개정안**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8 >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12 및 제106조의13**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12**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일부 >

**현행**

**개정안**

【제출구분】  국제조사용번역문  
 서류원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선출원번역문  서열목록 등  
 **서열목록보정**

【제출구분】  국제조사용번역문  
 서류원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선출원번역문  서열목록 등  
**<삭 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일부 >

**현행**

**개정안**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출구분 (생략)	내용 (생략)	관련 규정 (생략)
서열목록 등	표준에 맞는 <b>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b>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출명령을 받고 이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 106조의12· 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열목록보정	발명의 설명의 <b>서열목록부분이 PCT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b>	「특허법 시행규칙」 제 106조의13· 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

제출구분 (생략)	내용 (생략)	관련 규정 (생략)
서열목록 등	표준에 맞는 <b>서열목록이</b>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출명령을 받고 이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 106조의12· 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b>&lt;삭 제&gt;</b>	<b>&lt;삭 제&gt;</b>	<b>&lt;삭 제&gt;</b>

**현 행**

	정을 하려는 경우	칙 제17조
--	-----------	--------

2. ~ 9. (생략)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4) (생략)

(5) 서열목록, **진술서** 또는 보정서 1통 (서열목록 등 ~~또는 서열목록보정~~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생략)

**개정안**

2. ~ 9. (현행과 같음)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서열목록 또는 보정서 1통(서열목록 등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 작성에서 제외되는 **기준數 미만의 서열\***(10개 미만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 아미노산 서열)은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서식 정비

\* 기재 위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출원인과 제3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명세서의 [서열목록]란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일부 >

**현 행**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실시예】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부호의 설명】 )

( 【수탁번호】 )

~~(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

【청구범위】

【청구항 1】

~~( 【서열목록】 )~~

**개정안**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실시예】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부호의 설명】 )

⇒ ( 【수탁번호】 )

**( 【서열목록】 )**

【청구범위】

【청구항 1】

<삭 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뒤쪽 일부 >

**현 행**

아. 식별번호의 기재

**개정안**

아. 식별번호의 기재

**현행**

(1) 명세서 중의 【기술분야】부터 【서열목록-자유텍스트】까지의 식별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이하 생략)

[예] (생략)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0016】 ○○○○○○○○○○

【청구범위】

【청구항 1】 ○○○○○○○○

-【서열목록】-

(2) (생략)

2. 명세서 작성방법

가. 발명(고안)의 설명 기재 방법

발명(고안)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발명(고안)의 명칭】 , 【기술분야】 ,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 ( 【선행기술문헌】 ) , 【발명(고안)의 내용】 ,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 【수탁번호】 ) 및 (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란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중략). 다만, 【발명(고안)의 명칭】 ,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을 제외한 위 식별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식별항목 중 ( 【선행기술문헌】 )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 【수탁번호】 ) 및 (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적기 바랍니다.

(1) ~ (9) (생략)

(10)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란에는 서열목록에 적혀 있는 자유텍스트를 필요에 따라 반복하여 적습니다.

**개정안**

(1) 명세서 중의 【기술분야】부터 【서열목록】까지의 식별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예] (현행과 같음)

【서열목록】

【0016】 ○○○○○○○○○○

【청구범위】

【청구항 1】 ○○○○○○○○

<삭제>

(2) (현행과 같음)

2. 명세서 작성방법

가. 발명(고안)의 설명 기재 방법

발명(고안)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발명(고안)의 명칭】 , 【기술분야】 ,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 ( 【선행기술문헌】 ) , 【발명(고안)의 내용】 ,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 【수탁번호】 ) 및 ( 【서열목록】 )란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현행과 같음). 다만, 【발명(고안)의 명칭】 ,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 【발명(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을 제외한 위 식별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식별항목 중 ( 【선행기술문헌】 )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 【수탁번호】 ) 및 ( 【서열목록】 )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적기 바랍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서열목록】란에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특허(실용신

**현행**

나. (생략)

**다. 【서열목록】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작성 및 제출 요령」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적습니다.

**개정안**

안등록)출원인 경우에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을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현행과 같음)

**<삭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일부 >**

**현행**

2.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생략)

(7) (생략)

(8)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配列表)

해당하는 경우 조약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9) 서열목록의 프리텍스트(Sequence Listing Free Text, 配列表フリーテキスト)

해당하는 경우 발명의 설명을 작성한 언어로 적습니다.

**개정안**

2.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配列表)

해당하는 경우,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을 조약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작성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삭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일부 >**

**현행**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실시예】** )

**개정안**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실시예】** )

현 행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부호의 설명】 )
( 【수탁번호】 )
( <del>【서열목록 자유텍스트】</del> )

개정안
( 【산업상 이용가능성】 )
( 【부호의 설명】 )
( 【수탁번호】 )
<삭 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일부 >

현 행
<p>아. 식별번호의 기재</p> <p>(1) 발명의 설명 중의 【기술분야】 부터 <del>【서열목록 자유텍스트】</del>까지의 식별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예와 같이 각 문단 전에 【, 】 와 4자리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 (예 : 【0001】 , 【0002】 )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후 해당하는 문단 내용을 적습니다. (이하 생략)</p> <p>[예] 【발명(고안)의 명칭】 ○○○○ ○○○○○○○○○○○○○</p> <p>(중략)</p> <p><del>【서열목록 자유텍스트】</del></p> <p><del>【0016】</del> ○○○○○○○○○○○○ ○○○○○○○○○○○○○○○○○○○</p>

개정안
<p>아. 식별번호의 기재</p> <p>(1) 발명의 설명 중의 【기술분야】 부터 【수탁번호】까지의 식별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예와 같이 각 문단 전에 【, 】 와 4자리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예 : 【0001】 , 【0002】 )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후 해당하는 문단 내용을 적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예] 【발명(고안)의 명칭】 ○○○○ ○○○○○○○○○○○○○</p> <p>(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 서열목록은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되므로 서면 작성 내용과 동일하다는 진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반영

<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 >

현 행
<p>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p> <p>①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p>

개정안
<p>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p> <p>① 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u>조약</u></p>

## 현행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진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생략)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 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략)

##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을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1통

2. (현행과 같음)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서열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 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변경되는 PCT 출원서 서식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개정(붙임 1)

## □ 개정 효과

○ 新서열목록 국제표준을 국내 적용하여 바이오 관련 발명의 국제 적합성을 획득하고 전자화된 서열정보의 효율적 검색 기반 마련

## 임시 명세서 전문보정 전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의 반려

(특칙 제11조)

### □ 개정 이유

- 임시 명세서는 쏘文보정 후에 명세서등 보정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는 반려대상이나 제도도입 시('20.3) 누락

\* 기간 내(1년 2개월)에 전문보정하여 기재방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을 완비한 다음에야 명세서등 보정이 가능(특칙 제21조제6항)

- ※ 임시명세서 제도('20.3.30 시행): 특허출원 시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논문이나 기술문서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
- ▶ 다만,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이 필요

### □ 개정 내용

- 전문보정으로 기재방법에 따른 명세서를 구비하기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를 반려 대상에 추가

####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

현 행	개정안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생략) 1. ~ 5의2. (생략) <신설>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현행과 같음) 1. ~ 5의2. (현행과 같음)
6. ~ 22. (생략)	5의4. 제21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출원으로서 제21조제6항에 따른 보정서의 제출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하려는 경우 6. ~ 22. (현행과 같음)

### □ 개정 효과

- 제도 도입 시 누락되었던 절차를 보완하고 출원인이 임시 명세서에 대한 최초 보정을 전문보정으로 하도록 정정 및 유도 가능

## □ 개정 이유

- '21년 도입된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서 거짓·부정한 행위에 따른 당연 취소\*가 필요

\*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권익위)

## □ 개정 내용

- 전문심리위원의 거짓·부정한 행위에 대해 심판절차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당연 취소 사유를 추가

### <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

현 행	개정안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개정 효과

- 결격사유가 있는 전문심리위원의 심판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여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 상표출원에서 출원 시의 특례를 취하하는 서식 정비

(특칙 별지 제12호서식)

### □ 개정 이유

- 상표법 고유 제도인 출원 시의 특례를 취하할 수 있는 항목을 특허·디자인·상표 공통 서식에서 구분할 필요

- ※ 출원 시의 특례제도(상표법 제47조): 파리협약 제11조에 의한 동맹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대한 임시보호 부여 제도
- ▶ (요건) 해당 상품을 박람회에 출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 시에 주장
  - ▶ (효과) 선출원주의 예외가 인정되어 해당 박람회에 출품을 한 때 출원한 것으로 간주

### □ 개정 내용

- 출원 시의 특례를 취하하는 항목 구분을 신설하고, 기재요령을 추가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일부 >

현 행	개정안
<p>【구분】 <input type="checkbox"/> 특허 등 절차 취하 <input type="checkbox"/> 우선권주장 취하  <input type="checkbox"/> 심판청구 취하 <input type="checkbox"/> 심판청구 일부취하  <input type="checkbox"/> 심판참가 취하 <input type="checkbox"/> 특허 등 절차 포기  <input type="checkbox"/> 정정청구 취하 <input type="checkbox"/> 취소신청 취하  <input type="checkbox"/> 취소신청 일부취하 <input type="checkbox"/> 취소신청참가 취하  <input type="checkbox"/>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p>	<p>【구분】 <input type="checkbox"/> 특허 등 절차 취하 <input type="checkbox"/> 우선권주장 취하  <input type="checkbox"/> 심판청구 취하 <input type="checkbox"/> 심판청구 일부취하  <input type="checkbox"/> 심판참가 취하 <input type="checkbox"/> 특허 등 절차 포기  <input type="checkbox"/> 정정청구 취하 <input type="checkbox"/> 취소신청 취하  <input type="checkbox"/> 취소신청 일부취하 <input type="checkbox"/> 취소신청참가 취하  <input type="checkbox"/>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input type="checkbox"/> 출원 시의 특례 취하</p>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일부 >

현 행	개정안																																
1. 구분 및 관련 규정	1. 구분 및 관련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관 련 규 정</th> </tr> </thead> <tbody> <tr> <td>특허 등 절차 취하</td> <td>(생략)</td> </tr> <tr> <td>우선권주장 취하</td> <td>(생략)</td> </tr> <tr> <td>심판청구 취하</td> <td>(생략)</td> </tr> <tr> <td>심판청구 일부취하</td> <td>(생략)</td> </tr> <tr> <td>심판참가 취하</td> <td>(생략)</td> </tr> <tr> <td>특허 등 절차 포기</td> <td>(생략)</td> </tr> <tr> <td>정정청구 취하</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관 련 규 정	특허 등 절차 취하	(생략)	우선권주장 취하	(생략)	심판청구 취하	(생략)	심판청구 일부취하	(생략)	심판참가 취하	(생략)	특허 등 절차 포기	(생략)	정정청구 취하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관 련 규 정</th> </tr> </thead> <tbody> <tr> <td>특허 등 절차 취하</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우선권주장 취하</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심판청구 취하</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심판청구 일부취하</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심판참가 취하</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특허 등 절차 포기</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정정청구 취하</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관 련 규 정	특허 등 절차 취하	(현행과 같음)	우선권주장 취하	(현행과 같음)	심판청구 취하	(현행과 같음)	심판청구 일부취하	(현행과 같음)	심판참가 취하	(현행과 같음)	특허 등 절차 포기	(현행과 같음)	정정청구 취하	(현행과 같음)
구 분	관 련 규 정																																
특허 등 절차 취하	(생략)																																
우선권주장 취하	(생략)																																
심판청구 취하	(생략)																																
심판청구 일부취하	(생략)																																
심판참가 취하	(생략)																																
특허 등 절차 포기	(생략)																																
정정청구 취하	(생략)																																
구 분	관 련 규 정																																
특허 등 절차 취하	(현행과 같음)																																
우선권주장 취하	(현행과 같음)																																
심판청구 취하	(현행과 같음)																																
심판청구 일부취하	(현행과 같음)																																
심판참가 취하	(현행과 같음)																																
특허 등 절차 포기	(현행과 같음)																																
정정청구 취하	(현행과 같음)																																

## 현 행

취소신청 취하	(생략)
취소신청 일부취하	(생략)
취소신청참가 취하	(생략)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생략)

### 5. 【취하(포기)내용】란

가. ~ 차. (생략)

< 신 설 >

## 개정안

취소신청 취하	(헌행과 같음)
취소신청 일부취하	(헌행과 같음)
취소신청참가 취하	(헌행과 같음)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헌행과 같음)
출원 시의 특례 취하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

### 5. 【취하(포기)내용】란

가. ~ 차. (헌행과 같음)

가. 출원 시의 특례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법」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 중 취하하려는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박람회명】 OO 000 박람회

【박람회출품일자】 2009. 3. 5.

## □ 개정 효과

- 상표출원에 대한 출원 시의 특례 취하 구분의 명확화로 혼란 최소화

## Ⅲ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 '22. 3월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2. 3 ~ 4월
- 법제처 심사 : '22. 5월
- 공포 : '22. 6월

※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일('22.7.1)에 맞춤

- (PCT 출원서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PCT REQUEST); 제41호의 2 서식(PCT 출원서) 및 제42호의 서식(特許協力條約に基づく國際出願) 교체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0.2022. 7. 1.>

PCT 용도

**PCT  
출원서**

아래 서명자는 이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수리관청 전용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수리관청 명칭 및 "PCT 국제출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희망하는 경우 기재) (최대 25문자)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	
제2기재란	출원인	<input type="checkbox"/>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아래에 거주국을 적지 않은 경우, 이 난에 적은 주소상의 국가가 출원인의 거주국이 된다.)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특허고객번호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에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난에 표시한다.		
<input type="checkbox"/>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input type="checkbox"/>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성명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번호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에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난에 표시한다.		
<input type="checkbox"/>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 송부; 또는		<input type="checkbox"/>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input type="checkbox"/> 통신용 주소: 이 난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대신 위의 기재 공간에 특별히 통지서 송달을 위한 별도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 표시한다.		

서식 PCT/RO/101(첫 번째 용지)(2017년2022년 7월)

기재요령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b>제6기재란</b>	<b>우선권주장</b>
<p><b>[생략]</b>  <b>인용에 의한 보완:</b> 조약 제11조(1)(iii)(d) 또는 (e)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의 요소, 또는 규칙 20.5(a)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 또는 <b>규칙 20.5의2(a)</b>에서 규정하는 요소 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일부가 이 국제출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약 제11조(1)(iii) 규정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이 수리관청에 최초로 접수된 날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요소 또는 부분은 규칙 20.6에 따른 확인을 조건으로, 규칙 20.6과 관련하여 이 국제출원에 있어서 인용에 의해 보완된다.</p>	

<b>제9기재란</b>	<b>서면출원을 위한 체크 리스트- 서면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b>		
이 국제출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출원서 서식 PCT/RO/101 (모든 선언서 및 추가 용지 포함) ..... :  (b)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제외. 아래 (f) 참조) ..... :  (c) 청구범위 ..... :  (d) 요약서 ..... :  (e) 도면 (있는 경우) ..... :  (f)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있는 경우) ..... :  총 용지 매수 ..... :  (f) WIPO 표준 ST.26 XML 파일로서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물리적 매체들의 형태 및 매수를 기재하십시오.) ..... :	용지 수	이 국제출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b>첨부되어 있다</b>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에 표기를 하고 오른쪽 열에 각 항목의 개수를 표기한다).  1.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계산 용지 ..... : 2. <input type="checkbox"/> 개별위임장 원본 ..... : 3.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원본 ..... : 4.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사본; 참조번호 ..... : 5. <input type="checkbox"/> 제6기재란에 다음 항목으로 명시된 우선권서류 ..... : 6. <input type="checkbox"/> 국제출원 번역문 (번역문의 언어): ..... : 7. <input type="checkbox"/>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별도의 표시 사항(번역문의 언어): ..... : 8. <input type="checkbox"/> 선조사보고서의 사본(규칙 12의2.1(a)) ..... : 9.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 :	용지 수

다. “제2기재란 출원인”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출원인을 적습니다.

(생략)

3)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관청과 국제조사기관, 그리고 국제사무국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관청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

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및,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도 함께 적습니다. ~~“이메일 사용동의”란에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에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마.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생략)

- 5) ~~“이메일 사용동의”란에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에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란에 대해서는 다목의 3)과 같습니다.~~

타. “제9기재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리스트-이 용지는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 1)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국제출원이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개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서열들은 WIPO 표준 ST.26을 준수하여 서열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열목록 전자파일이 너무 커서 수리관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원인은 해당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물리적 매체로 제출하고 그 매체의 유형 및 수를 명시할 수 있으며,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이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 서열목록은 “서열목록”으로 표시한 물리적 매체로 제출하며 그 매체의 그 유형 및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PCT DEM AND) 및 제51호의 2 서식(PCT 출원서) 교체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의 2(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개정 2020. 3. 30.2022. 7. 1.>

PCT 용도

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둘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

IPEA/ \_\_\_\_\_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2장

특허협력조약 제31조에 따라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기를 청구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표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접수일
--------------	---------------

<b>제1기제란 국제출원의 표시</b>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일/ 월/ 년)	우선일 (최선일) (일/ 월/ 년)
발명의 명칭		
<b>제2기제란 출원인</b>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특허고객번호
<p><b>이메일 송부 동의:</b>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난에 표시한다.</p> <p><input type="checkbox"/>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서본 송부; 또는 <input type="checkbox"/>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p> <p>이메일 주소: _____</p> <p><input type="checkbox"/>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p>		
국적 (국가명):	거주국 (국가명):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	거주국 (국가명):	
<input type="checkbox"/>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서식 PCT/IPEA/401 (첫 번째 용지)(2016년2022년 7월)

기재요령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대리인  대표자로서

- 이미 선임된 자로서, 국제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을 대리하는 자이다.
-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자로서, 전에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되었다.
- 이미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더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절차를 위해 새로 선임된 자이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번호

**이메일 송부 동의:** 아래 난 중 하나에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발행한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하고자 할 경우 이 난에 적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난에 표시한다.

- 서면 통지서에 앞서 선행용 서분 송부; 또는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

-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 통신용 주소:** 이 체크박스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대신 위의 기재공간에 특별히 통지서 송달을 위한 별도의 주소를 적는 경우에 표시한다.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

**보정에 관한 설명:\***

1.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될 것을 희망한다.

- 출원 시 국제출원을 기초로 할 것.

발명의 설명에 관해서  출원 시 발명의 설명을 기초로 할 것, 또는

-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서열목록에 관해서  출원 시 발명의 설명을 기초로 할 것, 또는

(해당 경우만)  조약 제34조에 따른 아래 형태의 보정을 기초로 할 것.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청구범위에 관해서  출원 시 청구범위를 기초로 할 것, 또는

- 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그리고/또는

-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생략]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

또한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 |                                       |  |
|---------------------------------------|--|
| 1.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계산 용지 | 5. <input type="checkbox"/> <b>WIPO 표준 ST.2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열목록</b> |
| 2. <input type="checkbox"/> 개별위임장 원본  | <b>국제예비심사를 목적으로 한 서열목록(규칙13의3)</b>                                 |
| 3.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원본  | 6. <input type="checkbox"/> <b>카타 (구체적으로 명시):</b> 서열목록이 출원시 국제     |
| 4.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사본  | <b>출원의 개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b>                                  |
|                                       | 7. <input type="checkbox"/> <b>기타 (구체적으로 명시):</b> _____            |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청구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 기재요령**

[생략]

4. "제2기재란 출원인"란의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적습니다. 적을 출원인의 난이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의 앞  안에 X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에 관한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2기재란 출원인"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송부 동의"란은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적힌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이메일 주소"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국제사무국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및,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 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5.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송부 동의"란은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적힌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란과 관련된 기재요령은 제2기재란과 같습니다**

[생략]